

서울고등법원 2024. 12. 5 선고 2024나20295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2. 5 선고 2024나202959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가단153297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윤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김희천, 이광수

피고, 항소심당사자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나혜

변론 종결 2024. 11. 7.

판결 선고 2024. 12. 5.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가단153297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K,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라고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L,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B'이라고 한다) 사이에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2020. 10. 5.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232,767,66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1) 주위적으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제1심 판결 별지 채권자별 청구금액 계산표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11. 1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제1심 판결 별지 채권자별 청구금액 계산표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3. 12. 29. 자 준비서면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만 항소하였는데,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B이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승계합의 당시 D로부터 D가 사업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 P센터를 대신 운영해보라는 제안을 받아 D와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이고,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7면 제12행까지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의 대표이사 Q과 D의 회장(대표) U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승계합의 이전부터 본래 알고 있었던 사이이며, Q은 위 승계합의 이전에 위 U에게 592,000,000원을 대여해 주기도 한 점, ② 피고 B이 작성한 송금내역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승계합의 이전부터 D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가 제1호증 참조), ③ 설령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승계합의를 통해 실제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피고 B의 임차 의사와 D의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의 인식은 충분히 병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에 대한 사해의사의 추정이 반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B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성지용

판사백숙중

판사유동균

별지